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4. 22 선고 2015가단5398394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16. 4. 8.

판결 선고2016. 4. 2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,154,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10. 8.부터,
가. 피고 A은 2016. 3. 24.까지는 연 8%의,
나. 피고 B는 2016. 3. 24.까지는 연 5%의,
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A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나. 피고 B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 판결)

판사김소영

별지